

별정통신사업의 활성화 방향

김 교 대 LG-EDS 시스템 본부장

별정통신사업의 정의와 영역

별정통신사업의 정의(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3항)

-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
-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, 또는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

별정통신사업의 영역

-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제공
→ 전화, FAX, 주파수 이용(무선, 위성등),
기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
서비스
- 구내전기통신서비스
→ 구내통신서비스, 우편집배 서비스

타사업과의 관계

- 부가통신사업
 -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
 - 기간통신서비스를 간접 제공
 - 열거된 서비스외에는 부가통신사업으로 간주
 - 공전접속허용
 - 복합전송허용
 - 거래관계자 이용허용
- 구내통신사업 : 자기목적 사용 허용
 - ※ 부가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영역의 중복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.
 - ※ 기간통신사업자와 경합시는 경쟁력 약화소지가 있음(허가조건).

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요건

등록신청서

- 재정 · 기술능력 :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
- 이용자 보호계획 : 1인이상 이용자 보호기구
- 사업계획서 : 기간통신사업자와의 계약서

요건

- 외국인 지분 : 99년부터 외국인 지분 49%이하
- 실질자본금 : 설비보유 30억, 미보유3억, 구내통신 5억
-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인력 보유
 - 설비보유사업자 : 통신분야 기술계 3인, 기능계 2인 이상
 - 설비 미보유 사업자 : 통신분야 기술계 1인 이상
 - 구내통신 사업자 : 통신분야 기술계 1인, 기능계 1인이상
- 정보화 촉진기금 출연 : 전년도 매출액이 정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상 일시 전년도 매출액의 3%

감독권

- 통신위원회 조사권
- 정통부의 자료요청권

※ 실질자본금의 의미?

- 자기자본금인지, 사업에 투자된 자본인지
- 기존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진입시 증자가 요구되며 이경우 기존 사용장비의 실질자본으로의 포함 여부 문제가 발생

※ 출연금 부담

- 경쟁조건하에서 매출액의 3%는 경영압박요인이 될 수 있음.
- 기존 사업자의 사업진입시 회계분리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: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

별점통신사업의 구성요소와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

예상서비스	주요구성요소	Critical factor
음성재판매	교환기, 통신Node, 기술인력, 과금 / 수금	가격, 고정고객
국제콜백	교환기, 국제회선	가격격차
인터넷폰	서버, 노드, 이용자	품질, 이용자수
무선재판매	임차조건	가격
호집중 /재과금사업자	영업비용, Rebate	할인율
구내통신서비스	부동산, 관리비용	계약조건

- 기간통신서비스는 지배적사업자의 가격이 시장의 상한가격으로 형성되므로 별점사업자는 가격면, 품질면, 부가서비스면에서 경쟁을 하게되어 가격과 비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전략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.
- 인터넷폰등 타서비스의 부가적 서비스로서 시장진입이 쉬우며 국제, 장거리에서 유인이 있다.
- 구내통신서비스는 건물주와의 계약관계가 성공의 핵심이며 대형건물에서 사업성이 있으나 건물주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성이 높다.

별점통신서비스의 사업성 전망

회선재판매사업

- 설비보유 재판매
 - 망보유시 고정비 발생을 부담할 수 있는 고정고객확보
 - 기간통신사업자보다 가격·품질에서 유리할 수 있는 관리능력
 - 저렴한 회선임차가 성공요소임.
→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전략, 경쟁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수익성이 불투명함.

- 대형 망보유사업자가 유리함.

○ 인터넷폰

- PC to PC형은 부가통신사업영역
- PC to 공중망형은 공전접속형으로 독립사업으로는 고객확보가 어려우므로 부대사업으로만 존속가능
- 폰-인터넷망-폰형은 독립사업으로 성립

	96	97
세계 이용자	200만명	1,600만명
국내 이용금액 예상	-	464억

현재는 품질문제로 실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시외·국제전화분야에서 2001년에는 시장의 4% 점유예상(미국 IDC)

○ 구내통신사업

- 대형건물은 건물주가 직접수행 예상
- 중형건물은 건물주가 전문사업자에게 위탁
→ 실질적인 사업수행 가능
- 소형건물은 사업성 없음.

결 론

-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상의 목표는
 - 회선재판매의 허용과 규제
 - 신규서비스의 개발로 통신서비스의 질적 향상
 - 구내통신 Infra의 고도화로 정보화의 촉진에 있다고 볼때 규제보다는 사업참여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.
- 규제대상을 최소화 한다고 볼때 인터넷폰은 Phone to Phone형만을 등록대상으로 하여야 함.
- 사업성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전략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투자요인이 약하므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진출허가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회선공급가격을 기간통신사업자간의 회선공급가격과 동일한 수준에서 공급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긴요함.
- 출연금은 사업이익이 충분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부과하도록 시행보류(출연금은 기간통신사업자 회선임대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 부담이 됨) ●